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 2014. 4. 22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이진표 ]**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4년 4월 14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4년 4월 16일
- 의안번호 : 14-44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2014. 3.10 ~ 3.12)
-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2014. 3.19)

## 5.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추진단(TF팀)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6. 주요내용

- 구본청 부구청장 소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 (안 제3조의2 제1항)
-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 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3월30일 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 [ 검토결과 ]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 3.10 ~ 3.12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발언과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2014. 3.19)'에 의거 시·군·구 부단체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T/F)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 현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규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90%수준)로써, 중앙정부에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치 법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민생활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임에도 자치법규 미비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실태이므로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 운영하라는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T/F)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그 존속기간을 2015년 3월 30일까지로 하여
-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2014. 3.10~12),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2014. 3.19)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 긴급히 개정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4년 4월 14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4년 4월 16일
- 의안번호 : 14-43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2014. 3.19)’

## 5. 개정이유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증원하여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6. 주요내용

-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급이하 정원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안 제2조),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이하 1명은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 검토결과 ]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 3.10 ~ 3.12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과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2014. 3.19)에 의거, 시·군·구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T/F)에서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할 6급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규제개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마포구 정원을 “1,300명”에서 “1,30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1명”에서 “1,272명”으로 1명 증원(안 제2조)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6급이하 1명을 반영하고,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6급이하 1명은 2015년 3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안 부칙 제2조)는 것으로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 30조(정원의 규정),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히 시민생활 현장에서의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 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 ⑤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